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료법인을 포함〉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83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소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이 법의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에 의료법인 포함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4.
3. 회부연월일 : 2025. 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을 포함하여,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공리 활동 등 높은 공공성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고용창출효과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각종 중소기업 지원 등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음.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영리 활

동을 수행하는 점, 사업을 통해 유입된 수익은 해당 병원 시설·장비 등에 재투자되어 국가 및 지역사회 의료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영리 중소기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가 및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법은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규모 요건(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하) 등을 만족하는 영리기업, 그 밖에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일부 비영리단체를 영위하는 자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 법(「중소기업기본법」)의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자는 이 법과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창업지원(이 법 제5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1)), R&D지원(이 법 제6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2)), 국내외 판로지원(이 법 제7조, 제1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3)), 기업 구조전환 지원(이 법 제9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4)), 상생지원(이 법 제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조, 제11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5)), 인력 지원(이 법 제15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6)), 금융 지원(이 법 제19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7)8))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한편, 「의료법」 9)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해당 법률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7)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한다.

⑤ 기금 관리자는 제6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9)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개인사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 중 의료법인은 병상규모, 기본재산, 부채비율 등에 관한 관할 시·도별 설립요건¹⁰⁾을 충족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법 시행령」 제20조¹¹⁾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표 1] 개설주체별 의료기관 분류와 특성

분류	개설주체	법인격	민간여부	영리여부
공공 의료기관	국공립·시도립, 국립대, 지방의료원, 특수법인	법인	공공	비영리
비영리 의료기관	의료법상 의료법인, 학교·종교·재단·사회복지·회사 법인		민간	
영리 의료기관	개인	개인		영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 시·도별 요건 상이(예, 강원 - 병상당 3천만원 이상, 초기 2개월 운영자금, 부채 50%이내, 울산 - 30병상 이상, 병원 토지·건물 보유, 부채 45%이내 등)

11)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의료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 이외에도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하고 있음. 이러한 비영리 의료법인도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표 2] 개설주체별 의료기관 분류와 특성

개설주체	유형	운영 형태	성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개인 병·의원	민간	영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립병원, 도립병원, 국공립병원, 시립병원	공공	비영리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	의료법인	민간	비영리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국립대병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민간	비영리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공단	특수법인병원,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공단	공공	비영리
기타 「의료법」 제35조 (의료기관개설특례)	회사법인	민간	비영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영리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시행령의 분류기준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 법(「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어¹²⁾ 이 법과 중소기업 관계법령에 따라

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반면에, 「의료법 시행령」 제20조¹³⁾에 따라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자와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운영하는 법인이 영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법(「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포함될 수 없어,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자와 달리 중소기업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¹⁴⁾.

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3)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병원신문, [사설]의료법인, 중소기업 지원 범위에 포함돼야, 2024년 1월 15일자.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영위하는 자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이 법과 중소기업 관계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비영리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영위하는 자의 경영여건 및 사업지속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 대하여는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¹⁵⁾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으나, 비영리법인으로서 부여되는 혜택도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법 개정 여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¹⁶⁾.

일례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일

15)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 「중소기업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법」 및 하위법령상 의료법인은 영리 추구가 금지됨. 이처럼 중소기업과 의료법인은 각각 영리기업과 비영리법인이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부가 경감되는 혜택¹⁷⁾을 누리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세금혜택 등을 받는 의료법인에 영리기업과 유사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개정안의 입법 취지대로 의료법인이 안정적인 경영여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의 입법 취지대로 비영리 의료법인 등을 영위하는 자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는 경우 현행 중소기업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 관련 특례규정의 개정(삭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일례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는 정부가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및 해당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비영리 의료법인 및 해당 의료법인 재직 근로자도 이러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¹⁸⁾를 규정하고 있음.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1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그런데, 개정안의 입법취지대로 비영리 의료법인 등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이와 같은 개별 중소기업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특례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법의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리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비영리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 등)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부동의하며,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같이 의료법인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 법률인 「의료법」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63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